

■ 목 차

■ 지평지성 소식 ■

- 노동법연구소 해밀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 3
- 지평지성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4
- 이흥재 변호사 영입..... 5
- 김진권 전문위원/변호사 영입..... 7
- 정광현 변호사 영입..... 8
- 백종현, 설일영, 윤성후, 박수정, 이민희, 임미경 변호사 영입..... 9
- 채희석 변호사 복귀..... 11
- 고세훈 변호사 - 미얀마 현지법인 파견..... 12
- 지평지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개발컨설팅 네트워크 회원사로 참여..... 13
- [공약]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外..... 14

■ 법률 논단 ■

- [공정거래] 경제민주화 법령 개정 논의에 부쳐..... 17
- [자본시장]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의 발효에 즈음하여..... 21
- [건설부동산] 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23

■ 최신 법령 ■

- [상사] 개정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28
- [공정거래]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32
- [노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3
- [자원·에너지·환경 & 인프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35

■ 최신 판례 ■

- [상사] 주주의 '직접 손해'의 의미..... 39
- [공정거래] 기업결합과 카르텔의 관련시장획정 기준은 다르지 않다..... 42

- [지적재산권] 홍보 목적으로 논문을 복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46
- [노동] 파견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49
- [노동] 1년 내내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근로일수..... 51
- [조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환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53
- [도산]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의 파산채권 해당 여부..... 57

■ 단신 ■

- 이공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원장 임명..... 60
- 최승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로 선임..... 60
- 송기방 고문변호사, 한국배출권거래협회 법률고문 위촉..... 61
- 박영주 변호사, 서대문경찰서 관내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자문 위원 위촉..... 61
- 김성수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표창 및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위촉..... 62
- 명한석 변호사,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위촉..... 62
- 이근동 변호사, (사)대한중재인협회 이사 및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위촉..... 63
- 이행규 변호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63
- 김지홍, 이병주 변호사의 공동논문 「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의 딜레마」
저스티스 135호에 게재..... 64
- 지평지성 자본시장팀, 벤처캐피탈협회 초청으로 강의 진행..... 64
- 박용대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서 작성' 강의..... 65
- 신민 변호사, 한국환경법학회 기획이사 선임..... 65
- 정철 변호사, 해외자원개발협회 주관 '2013년 세계 자원개발 투자전망'에서
미얀마 관련 강의 진행..... 66
- 구상수 공인회계사, 서울시립대 주최 국제조세학술대회에서 발표..... 66

■ 지평지성 소식 ■

노동법연구소 해밀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

2013년 2월 1일 지평지성의 후원 아래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주최하는 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엄(주제: 노동법의 미래담론)이 관계자 140~150여 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관련 사진]



■ 지평지성 소식 ■

지평지성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양곤에 현지법인 'JIPYONG JISUNG MYANMAR'를 설립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은 지난 3월 12일 등록을 완료하고, 법인 사무소도 미야와디 뱅크 타워(Myawaddy Bank Tower)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2013. 3. 14.)
- 건설경제신문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2013. 3. 14.)
- 뉴스토마토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국 최초 미얀마 현지로펌' 설립(2013. 3. 14.)
- 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국 로펌 최초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2013. 3. 14.)
- 국토일보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국 로펌 최초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2013. 3. 15.)
- 서울경제 - 지평지성, 국내 로펌 최초 미얀마에 현지법인 설립(2013. 3. 18.)

[본사 미얀마팀]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미얀마 현지법인]



유정훈 변호사

장성 수석자문위원

고세훈 변호사

■ 지평지성 소식 ■

이홍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홍재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4월 이홍재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홍재 변호사는 법무관을 거쳐 1993년부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각 검찰청에서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 전자상거래법 개정 T/F 위원, 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 현대아이비티 사외이사, 신원종합개발 감사, 법무법인 도움의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홍재 변호사는 20여 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중동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공법)

[경력]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육군법무관

-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외교통상부장관 법률자문관)
-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부부장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
-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 현 세무사, 변리사
- 현 유진투자증권(주) 사외이사
- 현 신원종합개발(주) 감사
- 현 전자상거래법 개정 T/F 위원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지평지성 소식 ■

김진권 전문위원/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진권 전문위원/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3월 김진권 전문위원/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진권 전문위원/변호사는 시국관련 사건으로 기업공채가 불가능하던 시절, 대우 김우중 회장 특채사원으로 채용되어 대우자동차 루마니아 현지에서 공장관리부장과 지역판매책임자로 생산관리 및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루마니아에서 귀국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보좌관으로 10년간 근무하는 동안,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 및 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좌관으로 입법정책보좌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국회 내 보좌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김진권 전문위원/변호사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2기로 졸업하고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및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입법 및 공기업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부산 배정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졸업)

[경력]

- 대우자동차(노사협력부 및 루마니아 현지 생산관리부장 및 지역판매장)
- 국회 입법정책보좌관(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 회장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전문위원/변호사

■ 지평지성 소식 ■

정광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광현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1월 정광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정광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국제조사연구팀장 등으로 약 6년여간 헌법실무에 종사하였으며, 독일에서 헌법소송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주로 헌법소송사건 및 행정소송사건 관련 송무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한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민사소송법)
- 독일 Freiburg대학 LL.M.(법학석사)
- 독일 Freiburg대학 박사과정 졸업(헌법)

[경력]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육군법무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국제조사연구팀장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지평지성 소식 ■

백종현, 설일영, 윤성후, 박수정, 이민희, 임미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백종현** 변호사)

백종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충정에서 회사 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현재 지평지성 소송파트에 소속되어 건설부동산, 기업일반 등에 대한 소송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설일영** 변호사)

설일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고 지평지성 금융파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윤성후** 변호사)

윤성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하고 지평지성 소송파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수정** 변호사)

박수정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기 졸업생으로 지평지성 소송파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민희**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기 졸업생으로 지평지성 회사파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미경** 변호사)

임미경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기 졸업생으로 지평지성 소송파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채희석 변호사 복귀



(법무법인 지평지성 **채희석 변호사**)

2013년 2월 채희석 변호사가 러시아 유학을 마치고 본사에 복귀하였습니다.

채희석 변호사는 2011년 예비학부를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MGIMO) 석사과정(금융/조세)에 입학한 후 2년에 걸쳐 러시아의 조세법 및 금융관련법을 연구하였고, 2013년 6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가 러시아의 석사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사례로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학력]

- 대륜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석사과정 수료(금융/조세)

[경력]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육군법무관(고등검찰관)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수상]

-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학술의 날 우수논문상(러시아와 한국의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비교분석) 2012. 4.

■ 지평지성 소식 ■

고세훈 변호사 - 미얀마 현지법인 파견



(법무법인 지평지성 [고세훈 변호사](#))

2013년 3월 고세훈 변호사가 미얀마 현지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지평지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개발컨설팅 네트워크 회원사로 참여

2013년 2월 지평지성이 그동안 쌓아 온 동남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개발컨설팅 네트워크 회원사로 참여해 향후 동남아 ODA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제도 지원 및 정비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개발컨설팅 네트워크 출범식에는 금융파트 이행규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공익]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ㄸ

지평지성은 지난 4월 13일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은 기업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판매함으로써 나눔과 순환을 지향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번 행사에 2,800점의 물품을 기증하고 행사 당일 30여 명의 임직원들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물품 판매를 도왔습니다. 야외 이벤트로 와플도 판매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의 정기수익 배분 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사진]



지평지성 공익위원회에서 3월 23일 '겨레얼학교와 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20여 명의 임직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겨레얼학교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겨레얼학교는 탈북청소년과 탈북2세 아동,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평지성과 구성원들이 매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지난 2월 26일 아쇼카 재단 관련 2013 제1회 공익강연이 지평지성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쇼카 재단은 70개국 상당의 국가에서 경제, 교육, 보건, 의료, 환경, 인권 등과 관련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 개인을 'Fellow'로 선발하여, 금전적 지원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아쇼카 재단의 다른 Fellow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 및 교류 기회, 전문적 자문(프로노보 컨설팅 서비스, 법적 지원 등) 등을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최근 아쇼카 재단이 한국 지부인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을 설립하였는데, 지평지성이 설립형태, 설립절차 등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행규 변호사, 임승혁 공인회계사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아쇼카 재단 및 아쇼카 재단이 추구하는 공익 활동의 형태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진]



■ 법률 논단 ■

[공정거래] 경제민주화 법령 개정 논의에 부쳐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형삼 변호사)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국민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단순한 정치적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99헌바91).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모두 3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출자총액제도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에서부터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전속고발제 폐지, 집단소송제도 및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임명절차 개선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은 대기업 계열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일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자녀들이 회사를 설립하면 그룹 계열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 몰아주기'), 심지어 주요 수익사업을 떼어주기도('일감 떼어주기') 하는 행태가 대표적인 비판의 대상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서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상 부당

지원행위의 경우 계열회사 간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경쟁당국이 입증하기 어려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고 '유리한 조건'만으로 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초 여러 건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입법안의 내용은 기존 개정법률안보다 규제가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법에서 일감을 몰아준 기업 측, 지원주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받은 회사 측,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내부거래로 혜택을 받은 계열회사에 대한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나아가 대기업 총수 일가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공여가 정당한 예외적 거래임을 해당 계열회사가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한 경제민주화 내지 경제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일부 대기업총수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나 상속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쌓아온 공을 스스로 까먹는 일이라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재계에서는 지금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법개정을 논할 때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이 4.17%에 불과한데도(공정위 보도자료, 2012. 4. 12 기준), 계열회사들을 마치 개인기업인양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과 같은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자영업자 창업의 성공확률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청년실업으로 대학문을 나서기 꺼려하는 팍팍한 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보듬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비판이 모든 대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년에 지구의 몇 바퀴를 돌며 경영일선에 서서 더욱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을 뚫고 나가는 대기업 총수들이 있는가 하면 기

술개발과 품질경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기준 제정에 따라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 건설 분야에 있어서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계열회사가 아닌 독립 중소기업에게 사업기회를 개방하는 대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지난 4월 10일 △하도급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기술유용 및 탈취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업자에게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여야 정치권이 지난 대선에서의 공통 공약 80여 개 법안을 올해 6월까지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경제민주화 관련법령 개정안들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일부 정치권에서만 논의되어 온 감이 없지 않았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실무계 등으로 좀 더 확대되고 다양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큰 틀에서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우리 헌법규범의 틀 안에서 피규제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규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존 규제법령의 체계와도 조화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효율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서 당초 입법 취지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질서의 틀을 더욱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기업은 각자의 역할을 다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은 나름대로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절한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거대 자본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마련해야 하며, 경제 주체간의 합리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이 만들어진 지 오래 되었지만 요즘처럼 널리 공감을 얻고 있는 시기도 일찍이 없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정치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었고, 우리 경제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서는 물론 안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특정 개인이나 경제주체가 부당하게 이익을 독차지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마냥 방치해 두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차제에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한 경제질서가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 시대에 맞게 다시 살펴보고

보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적 규범이자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법률 논단 ■

[자본시장]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의 발효에 즈음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

지난 4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금전대여 성격의 PEF(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 옵션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이하 '신 모범규준')을 발표했습니다. 신 모범규준은 4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그간 이 모범규준의 준비와 발효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PEF는 2005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통해 도입된 이래 상당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2013. 2. 28. 현재 228개의 PEF가 설립 및 등록). 제도 도입 초기에는 능력이 검증된 GP(General Partner)가 별로 없어 GP가 펀드를 조성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LP(Limited Partner)도 GP에게 펀드 운영을 전적으로 맡길 수 없어 일정한 관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시장에서는 GP에게 투자대상의 선정과 자금 집행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Blind Fund 형태가 아니라 투자대상이 확정된 소위 Project Fund 형태의 PEF가 상당수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roject Fund를 운용하는 GP와 이에 참여하는 LP가 투자회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옵션부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PEF 등록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equity 투자로서의 리스크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옵션부 투자가 buy-out fund라는 PEF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하여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규제해 왔습니다(이하 '구 가이드라인').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PEF 도입 초기의 시장 환경으로 인해 구 가이드라인은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고 감독당국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초기 PEF 시장이 가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신 모범규준은 이러한 초기 PEF 시장의 한계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는 감독당국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이를 제정 공표

하였습니다. 감독당국이 신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는 PEF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LP 주도의 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 PEF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신 모범규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PEF의 건전한 투자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신 모범규준에 따르면 구 가이드라인과 달리 옵션부 투자에 대한 즉시 보고의무가 폐지되어 신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 모범규준은 구 가이드라인에서 불투명했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call option은 어떤 조건하에 허용되는지, PEF의 drag-along은 허용이 되는지, PEF의 drag-along에 행사에 대한 대주주의 call option은 허용되는지, 최대주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put option을 행사하면서 추가로 손해배상예정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등이 그것입니다.

한국 M&A, 구조조정 시장에서 PEF가 차지하는 위상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PEF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의 성장 단계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펴 온 감독당국의 노력도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국내 PEF가 해외 유수의 PEF와 경쟁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가는 국내기업과 연기금들을 위해 역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제정 공표한 신 모범규준은 구 가이드라인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제대로 그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 모범규준이 앞으로 좀더 구체화되고 불명확한 영역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 국내 PEF 시장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균형감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법률 논단 ■

[건설부동산] 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 부개정, 이하 '집합건물법')이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까지 두 달 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법은 1984년 제정 후 일곱 차례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은 상가 건물의 점포에 대해 구분소유권 성립을 인정한 2003년 7월 18일 개정 후 가장 큰 폭의 개정입니다 (표 1 : 집합건물법 주요 개정 연혁 참조).

제정·개정일	공포번호	시행일	주요 내용
1984. 4. 10.	제3725호	1985. 4. 11.	집합건물법 제정 법률
2003. 7. 18.	제6925호	2004. 1. 19.	상가 등 구분된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정함(제1조의2 신설)
2005. 5. 26.	제7502호	2005. 5. 26.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주택법이 우선 하도록 정한 주택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부칙 제6조를 개정
2008. 12. 26.	제9172호	2008. 12. 26.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공용부분 변경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집회 결의 또는 서면합의로 완화(일반 집합건물은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결의 또는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가 필요함)

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책임기간 개선(제2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배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집합건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제2조의2 신설)
-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제9조의2 신설)

■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담보책임 인정(제9조 개정)

- ▷ 분양자(시행사) 뿐 아니라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함
- ▷ 다만 시공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범위 내로 한정되며, 담보책임 중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구분소유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함

■ 임차인 등에게 공용부분 관리 등에 관한 의결권 부여(제16조 제2항, 제24조 제4항 및 제26조의3 제2항 신설)

- ▷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전자투표제 도입(제38조 및 제41조 개정)

-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어 관리단집회가 활성화되도록 함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10 신설)

- ▷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집합건물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개정 집합건물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기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의 제명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꾸고 담보책임기간 등에 관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입법예고기간이 끝난 상태로 곧 의결되어 개정 집합건물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같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일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겠습니다.

담보책임의 범위 및 기간

먼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주택법 뿐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해(제2조의2)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이 적용되어 보, 바닥, 지붕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5년인 반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라서 공동주택이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보다 오히려 단기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형평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집합건물의 담보책임기간이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과거 집합건물법에서 민법을 준용함으로써 부위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인정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세분해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안)이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안) 제5조 제1항].

하자 부위	담보책임기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및 지붕·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안전상 하자	5년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전 발생한 하자	5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담보책임기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으로 담보책임기간이 일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보·바닥 및 지붕은 5년의 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시설공사별로는 1년에서 4년까지로 세분해 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조성공사의 경우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는 2년, 포장공사는 3년의 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은 대지조성공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5년의 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어 주택법보다 장기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법 상 담보책임의 일부는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범위에서는 제외될 수 있어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하자보수보증서는 주택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과거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은 민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기산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인도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개별 수분양자가 인도를 받은 시점으로 볼 것인지,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이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즉,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했습니다(제9조의2 제3항). 일반적인 경우는 위 기산점에 큰 차이가 없겠지만 미분양아파트의 경우처럼 사용검사일과 구분소유자가 인도받은 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사안에서는 위 규정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인정

기존 법리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자에게만 직접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공자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주택법 제46조 제1항), 내력주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했습니다(제46조 제3항).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시공자에 대하여도 직접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의 책임은 분양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2차적, 보충적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공자의 책임 내용은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제9조 제2항). 아울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기존의 채권자대위권 법리에 따른 법률관계와 큰 차이가 없도록 분양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분소유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지도록 정했습니다(제9조 제3항). 이러한 내용을 보면 실무상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영역에서는 과거와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는 이미 채권자대위법리에 근거해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책임기간은 상당 기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즉 현재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급할 경우 해당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피대위채권은 분양자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인데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하지만 집합건물법에서 시공자의 담보책임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구분소유자가 시공자에 대해 행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른바 법정채권(法定債權)이 되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개정 법률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지만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시행일 후 분양된 건물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최신 법령 ■

[상사] 개정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정철 변호사 | 이경호 변호사

1. 개정 배경

개정전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할 경우 회사가 자신의 사원이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며,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을 감소시켜 다른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전상법 하에서도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기업이 상장되었는지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차별적으로 규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회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주가 유지 등 재무전략적인 차원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으며, 취득재원을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제한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등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가. 자기주식 취득 허용 범위의 확대(상법 제341조)

개정상법에서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을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전면

적으로 허용하였고(상법 제341조), 합병 또는 영업양수로 인한 경우 등 종래 상법에 의하여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와 관계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1조의2).

또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기주식 처분 기간의 자유(상법 제342조)

개정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필요에 따라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이익소각제도의 폐지(상법 제343조)

개정전상법에서는 주식 소각의 방법으로 (i)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와 (ii)주주에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이익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개정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면서 별도로 이익소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주식 취득 후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관련 문제

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효력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 반

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채권자도 직접 주주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2항).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익배당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직전 결산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결산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게 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사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말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취득 이후의 사정변화를 근거로 자기주식취득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의 상대방

자기주식의 취득방법과 관련하여 특정 주주만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그 주주의 주식만을 취득하는 것은 다른 주주에게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반대해석).

다만,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는데, 일부 주주가 양도신청기간 내에 양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주주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주주들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자기주식 처분의 상대방

개정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처분상대방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주식의 처분은 경제적으로 신주의 발행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주식의 처분이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잠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전상법 하에서의 하급심 판례 중에는 자기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다른 주

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 선고 2006카합393결정). 위 판례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처분이라는 개인법적 거래에 주주평등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론으로서는 몰라도 해석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상법」 타법개정(법률 제10366호, 2012. 6. 11. 시행)

■ 최신 법령 ■

[공정거래]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박형삼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1.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경쟁제품 취급금지 범위 축소, 판매목표량 위반시 계약해지 제한

가. 공정위는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해 모범계약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임. 향후 공정위의 제약분야 모니터링 대상 및 방향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음.

나. 주요 내용: 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생산 제한을 금지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을 금지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의 범위 축소), ②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시 즉시 계약해지를 금지 (최소구매량·판매목표량 한정 조항 개선), ③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가능 (원료구매 강제 조항 개선), ④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속 기술혁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상허여 조건을 금지 (개량기술 이전 조항 제한).

2. 다운로드 :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 최신 법령 ■

[노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황인영 변호사 | 강재영 변호사

1. 개정 이유

파견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여금, 성과금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중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를 "다음 각 목의 사항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중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를 "다음 각 목의 사항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3. 다운로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668호 및 법률 제11667호)

■ 최신 법령 ■

[자원 · 에너지 · 환경 & 인프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채희석 변호사 | 주성훈 변호사

1. 개정 이유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국내 태양광에너지 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의 태양광에너지 공급목표량[2016년까지 1,577기가와트아워(GWh)]의 달성시한을 2015년까지로 1년 단축하고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연도별 태양광 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조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의 신고대상 에너지원을 종전의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에서 수력,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신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태양광 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 변경(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 별표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공공기관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필요한 경우 일정량 이상을 특정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2항).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종래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비율에 대한

연도별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제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도	개정전(단위 : GWh)	개정후(단위 : GWh)
2012년	276	276
2013년	591	723
2014년	907	1,156
2015년(이후)	1,235	1,577
2016년(이후)	1,577	

위에서 살펴본 공급의무자는 발전량 중 의무공급량 이상의 에너지를 직접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다른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후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5항, 제12조의7). 이에 따라 당분간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신고대상 에너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는 (i) 태양에너지, (ii) 바이오에너지, (iii) 풍력, (iv) 수력, (v) 연료전지, (vi)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vii) 해양에너지, (viii) 폐기물에너지, (ix) 지열에너지, (x) 수소에너지가 포함됩니다(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1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신고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신·기술에너지법 제22조), 그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및 지열에너지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신고대상 에너지가 나머지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신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원의 종류별	자본금 및 기술인력
1. 태양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2.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3. 풍력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4. 수력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5. 연료전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7. 해양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에너지원의 종류별	자본금 및 기술인력
8. 폐기물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9. 지열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10. 수소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3. 다운로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법률 24338호)

■ 최신 판례 ■

[상사] 주주의 '직접 손해'의 의미

정철 변호사 | 이태현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쟁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A(이하 '소외 회사')의 임원B(이하 '피고')는 2001년 7월 30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약 21회에 걸쳐 회사 자본금의 160%에 달하는 약 319억원을 횡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를 주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외 회사는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주 2명(이하 '원고')은 구(舊) 상법 제401조 제1항(2012. 4. 14. 법률 제10600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식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주 1명은 2001년 2월 28일부터 2002년 2월 27일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70,000주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1명은 2001년 11월 7일부터 2002년 2월 26일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141,5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를 때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이른바 주주의 간접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사안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손해가 주주의 '간접 손해'인지 아니면 '직접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주주의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의 의미

¹ 현행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해 문구가 일부 수정("임무를 해태한 때" → "임무를 게을리 한 때")되었으나 그 취지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가. 간접 손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횡령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러한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 법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판례에서는 주주의 간접 손해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서 제외되는 명시적인 근거나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주주의 간접 손해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 39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주주의 대표소송을 통해 전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나. 본 판결에서 문제된 직접 손해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주주의 간접 손해가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 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직접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는 주주가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 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한 경우 취득가격과 정상주가의 차액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횡령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횡령의 과정에서 부실공시나 주가조작 등의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주가하락의 손해를 주주의 직접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실공시 내지 주가조작으로 인한 주주의 직접 손해가 인정되고 부실공시 내

지 추가조작과 주주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몇 가지 판단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 ① 어떠한 내용의 부실공시 내지 추가조작이 있었는지
- ② 주주가 어느 부실공시 내지 추가조작으로 인해 진상을 알지 못한 채 주식 평가를 그르쳐 몇 주의 주식을 정상주가 보다 얼마나 높은 가격에 취득하였는지

판례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는 사례로 ① 주주가 피고의 추가조작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또는 ② 추가조작으로 인한 주가 부양의 효과가 사라진 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3. 판결의 시사점

이사의 횡령행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주의 간접 손해만이 문제되나, 부실공시 내지 추가조작행위와 주주의 주식취득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직접 손해'가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주는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손해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손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제시한 상당인과관계 인정을 위한 평가요소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 최신 판례 ■

[공정거래] 기업결합과 카르텔의 관련시장획정 기준은 다르지 않다

김지홍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1. 판결의 취지

- 가.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관련상품시장 획정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합의의 대상·목적·효과 등은 주로 관련상품시장 획정 그 자체를 위한 고려요소라기보다 관련상품시장 획정을 전제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게 되면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한 다음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관련상품시장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사실관계

음료제품은 원재료 및 제조방법 등 기준에 따라 ① 과실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가공한 주스음료인 과실음료, ② 콜라, 사이다, 탄산수 등 탄산음료, ③ 커피,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차류, 두유류, 먹는 샘물 등으로 구성된 기타음료로 구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음료제품을 생산·판매하는 5개 사업자(이하 '음료 5개사')들이 2008년 2월경, 9월경 및 2009년 2월경, 음료 5개사 중 주요 2개사가 2008년 12월경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음료 5개사에게 시정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원고를 포함한 3개사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상을 논의한 청량음료협의회에서 음료 5개사들은 공동행위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음료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교환한 정보 내용도 가격인상 품목 전체에 대한 것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가 다른 품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보아 2008년 2월경 공동행위, 2008년 12월경 공동행위, 2009년 2월경 공동행위 결과 인상된 음료제품 전체를 관련상품으로 파악했습니다(2008년 9월 공동행위의 경우 가격인상 예정품목이 2008년 2월 공동행위 품목과 겹치고 실제 가격인상도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상품에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음료 5개사 중 원고에게, 2008년 2월경 공동행위에서 과실음료 16개 품목, 기타음료 11개 품목 등 총 27개 품목, 2009년 2월경 공동행위에서 추가로 과실음료 21개, 기타음료 8개 등 29개 품목을 관련상품으로 인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14억 1,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처분'). 원고는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별로 시장을 달리 확정하여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시장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잘못 획정한 후 이에 기초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관련시장의 획정은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의 경계를 특정하고 구분하는 수단이고 경쟁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기본 틀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의 획정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전제하에 기업결합과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 획정은 달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업결합의 경우 장래 발생할 경쟁상황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것인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미 발생한 담합의 위법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관련시장 획정은 무엇보다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공동행위의 대상 및 내용, 공동행위로 이미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영역 내지 분야 등을 일차적인 판단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은 (i) 음료 5개사는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를 모두 포함하여 음료제품 전체를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 및 내용으로 삼았고, (ii) 가격인상의 목적 및 의도 또한 전체 음료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었으며, (iii) 경쟁제한의 효과도 전체 음료시장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과실음료, 탄산음료 그리고 기타음료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음료시장을 관련상품시장으로 획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은 2008년 2월경 공동행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로 이 사건 과징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시장 획정의 기준은 기업결합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이 들고 있는 관련상품시장 획정 기준인 합의의 대상·목적·효과 등은 주로 관련상품시장 획정 그 자체를 위한 고려요소라기보다 관련상품시장 획정을 전제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잘못된 시장획정으로 먹는 샘물, 두유류,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한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까지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되었는데, 이들 음료상품들은 기능과 효용 및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면에서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관련상품시장 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음료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상품시장을 다시 획정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의 상고 또한 마찬가지로 관련시장 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야 판단될 수 있다면서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기업결합과 담합의 관련시장 획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업결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쟁제한효과를 사전 예측한다는 점에서 이미 발생한 경쟁제한효과를 사후 평가하는 담합과 다르다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심 판결 또한 이러한 입장에 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관련시장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써 문제된 행위가 무엇이든 간에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의 획정 기준은 동일하다고 결론 내려 그간의 논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작년에 있었던 [수입차 딜러 사건](#)과 함께 중요한 판결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해, 공동행위 사건 또한 당연위법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며, 카르텔 사건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은 기업결합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는데,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이러한 결론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수입차 딜러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금번 판결로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고 서울 고등법원에게 관련시장 획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명한 것이므로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8939 판결](#)

■ 최신 판례 ■

[지적재산권] 홍보 목적으로 논문을 복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승수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1. 논문복제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외국 회사로부터 기능성 원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같은 외국 회사로부터 같은 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한 다른 국내 회사가 제품 홍보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을 받기 위해 작성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논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식약청에 다시 제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이하 '갑회사')는 A외국법인(이하 'A회사')으로부터 리프리놀(LYPRINOL)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2002년경 리프리놀의 효능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이하 '논문 저자')에게 리프리놀의 관절염증 조절 및 관절기능 개선에 대한 임상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위 논문 저자들은 관절염 환자를 상대로 임상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2002년 5월경 리프리놀의 효능에 관한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갑회사는 2004년 위 논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리프리놀이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갑회사와 A회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자, 을 주식회사(이하 '을회사')는 2008년 5월경 A회사로부터 리프리놀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을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논문 저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논문 전체를 직접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했습니다.

3. 피고인의 변론 및 대법원의 판단

가. 저작권 양도 또는 포괄적 이용허락

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이 A회사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포괄적 이용허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논문 저자들이 논문의 해외 출판을 위하여 그 편집을 A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위임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논문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공정이용 법리

피고인은 공정이용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논문을 복제한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복제행위를 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구 저작권법 제2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된 경위, 피고인이 위 논문을 식약청에 제출함으로써 제품 판매에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면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같이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을 복제한 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 내부에서 영리 목적으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 최신 판례 ■

[노동] 파견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김성수 변호사 | 여연심 변호사

1. 판결 요지

G사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G사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G사의 지휘명령 아래 G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각 사업주들은 이러한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반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2. 사실관계

검사는 G사와 협력업체들이 협력업체의 근로자를 사용한 방식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나, 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대상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G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자동차 업계에서 최초로 불법파견을 이유로 파견법위반죄가 인정된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1심은 G사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일반적인 도급계약관계보다는 좀 더 강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협력업체의 독자성 등 전체적인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면 도급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를 전제로 하는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심은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협력업체의 독자성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고, 인정되는 여러 사실에 의하면 G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7고정276판결
- 2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대법원은 2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1심 판결은 주로 협력업체의 독자성을 근거로 파견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도급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고, G사가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과 근태, 작업내용 등을 결정하였음을 근거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력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급비 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심 판결은 특히 “도급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강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특정한 일의 완성이 아니라 어떤 공정에 필요한 노무만을 제공받고자 하는 도급계약 관계는 근로자파견 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7고정276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노동] 1년 내내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근로일수

1. 판결 요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어 1년 동안의 근무기간이 통상 근로자들보다 현저히 적은 근로자들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사정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1년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학교 회계직원들로서 학교의 방학기간 때문에 1년 중 장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원고들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왔기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만큼의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 위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하여야 할 날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주어지는데, 위 1년은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365일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1년 중 장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도 8할 이상 출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5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위 판결은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연차휴가수당의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의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사안이므로 상급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됩니다.

4. 다운로드 : [수원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1가합26325 판결](#)

■ 최신 판례 ■

[조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환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박용대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 구상수 공인회계사

1. 판결 요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9년 3월경 A건설회사로부터 약 13억 9,100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한 후, A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파주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이유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시한 후, 그 법적 성질을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등). 부가가치세법은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정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소송실무의 관점에서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반대의 견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오납부금 반환청구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실무관행도 확립된 상황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구태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 선택이나 소송실무상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기존 판례 법리

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 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 법리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써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을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뿐 정부에 대하여 과오납부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과오납금의 환부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정부가 부가가치세

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5. 유의할 점

앞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0조는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하여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7조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한 소송을 종전처럼 민사법원에 제기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이송될 수도 있지만, 이송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43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가집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26조), 부가가치세 및 세법 전반에 관한 법리를 갖춘 전문적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뀐 제도 하에서는 종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6.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 최신 판례 ■

[도산]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의 파산채권 해당 여부

배성진 변호사 | 배기완 변호사

1. 사실 관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甲회사는 乙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속하는 이 사건 아파트 대지를 양도받아 체비지 매매대장에 등재한 후 그 지상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82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함. 그 당시 乙조합은 甲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이 보유한 체비지 중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면적의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매매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 주었음.

이후 甲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음. 이에 임차인 대표자회의는 甲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시행된 임대주택법 조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음. 원고들을 포함한 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제8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甲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것을 청구함. 甲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위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계약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계약해제 선택권 행사를 주장함.

한편 乙조합은 甲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도급계약 이행 또는 해지 여부의 선택에 관한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甲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음.

2. 쟁점

-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3. 판시사항

- (1)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甲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후 시행된 2008. 3. 21.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의 신설 규정에 따라 乙등 임차인들이 관할 구청장한테서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甲회사를 상대로 해당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자, 甲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서 정한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이나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등 임차인들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에 기한 해당 아파트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甲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파산선고 당시에는 아직 이러한 매매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쌍방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서 정한 파산관재인의 계약해제 선택권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 (2) 甲회사가 乙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乙조합한테서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 매매대장의 매수인 명의를 이전받아 그 중 일부에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그 후 甲회사가 도급공사의 공정률이 74.791%인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파산선고를 받자, 乙조합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라 甲회사 파산관재인에게 도급계약 이행 또는 해지 여부의 선택에 관한 확답을 최고한 사안에서, 乙조합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동액 상당의 체비지를 수급인인 甲회사 앞으로 이전하여 줌으로써 도급인으로서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도급계약은 파산선고 당시에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35조는 처음부터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4. 해설

본건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가 적용되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전제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사항은 파산선고 당시에 상대방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 사항은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파산선고 당시에 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제 사항과 관련해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甲회사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 당시에 매매계약이 성립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파산선고 당시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단순한 기대권에 불과하여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매매계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 전제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동액 상당의 체비지를 이전하는 것이 도급계약 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乙조합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동액 상당의 체비지를 수급인인 甲회사 앞으로 이전하여 줌으로써 도급인으로서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도급계약은 파산선고 당시에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35조는 처음부터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서 정한 계약해제 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 채권의 파산채권 해당 여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 완료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 단신 ■

이공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원장 임명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공현 대표변호사**)

2013년 4월 이공현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기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입니다.

최승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로 선임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대한변협, 부협회장 감사 등 새 집행부 구성 매듭(2013. 2. 28.)

■ 단신 ■

송기방 고문변호사, 한국배출권거래협회 법률고문 위촉



(법무법인 지평지성 [송기방 고문변호사](#))

2013년 1월 송기방 고문변호사가 한국배출권거래협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박영주 변호사, 서대문경찰서 관내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자문 위원 위촉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영주 변호사](#))

2013년 3월 박영주 변호사가 서대문경찰서 관내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자문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단신 ■

김성수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표창 및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2013년 1월 김성수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변호사회의 전공별(의료)커뮤니티 부회장, 전자소송 제도연구특별위원회 및 국제화위원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후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여 서울변호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김성수 변호사가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2009년부터 5년간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련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한석 변호사,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가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단신 ■

이근동 변호사, (사)대한중재인협회 이사 및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근동 변호사)

2013년 2월 이근동 변호사가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2013년 2월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행규 변호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

2013년 4월 9일 이행규 변호사가 한국의 선진국 진입 경험을 후진국에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조직한 개발컨설팅네트워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입니다.

■ 단신 ■

김지홍, 이병주 변호사의 공동논문 「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의 딜레마」 저스티스 135호에 게재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지홍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2013년 3월 김지홍, 이병주 변호사의 공동논문이 경제법판례연구 제8권에 「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논문]

- 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의 딜레마 - 경쟁법의 숙명, 저스티스 135호(2013년)

지평지성 자본시장팀, 벤처캐피탈협회 초청으로 강의 진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 이은영 변호사)

2013년 3월 21일 지평지성 자본시장팀 이행규, 채희석, 이은영 변호사가 벤처캐피탈협회 초청으로 'PEF 관련 법규 실무와 옵션부 투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의에는 40여 명의 벤처캐피탈 운용 및 관리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단신 ■

박용대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서 작성'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용대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가 2013년 1학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서 작성'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민 변호사, 한국환경법학회 기획이사 선임



(법무법인 지평지성 **신민 변호사**)

2013년 1월 신민 변호사가 한국환경법학회 기획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 단신 ■

정철 변호사, 해외자원개발협회 주관 '2013년 세계 자원개발 투자전망'에 서 미얀마 관련 강의 진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2013년 4월 3일 정철 변호사가 포스코건설 직원을 대상으로 '미얀마투자'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 3월 28일 정철 변호사가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한 '2013년 세계 자원개발 투자전망' 교육에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및 MIC 공고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상수 공인회계사, 서울시립대 주최 국제조세학술대회에서 발표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상수 공인회계사)

2013년 2월 25일 구상수 공인회계사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주최한 국제조세학술대회에서 'Overview of Taxation of Outbound Investment'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